

#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3. 12. 16(월)

산 업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3. 12. 2
- 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13. 12. 3
- 라. 상정일자 : 2013. 12. 4(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)
  - 제안설명 : 환경녹지국장 조영근
  - 검토보고 : 산업전문위원 구남회
  - 질의 및 토론
  -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개정사유

-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하수처리 원가 이하로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 요금을 인상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업종별(업무용, 영업용, 옥탕용) 사용구분에 따른 누진체계를 조정하고, 하수도 사용료 33.18% 인상함.(안 별표 1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업의 재정건전화와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2012년도 하수도사업 결산결과 하수처리 총괄원가의 73.1%에 불과한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33.18%를 인상하는 사항으로 지난 10월 16일 개최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된 인상안을 반영한 사항으로.
- 업종 내 누진단계가 최대 6단계로 누진이 강화되고 있어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사용량에 따라 요금격차가 극심하여 요금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정용과 산업용을 제외한 3개 업종(업무, 영업, 옥탕)에 대하여 누진체계를 조정하였음.
- 현재 인천시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2012년 1월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30% 인상·조정하여 현재 73.1%로 6대 광역시 평균 72.8%와 비슷한 수준이며,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보면, 하수도 사용료의 총괄원가는 1,541억원( $m^3$ 당 539.31원)이고 사용료 수입은 1,126억원( $m^3$ 당 394.12원)이며, 결함액은 415억원( $m^3$  145.19원)으로 약 36.84%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,
- 또한 하수처리 총괄원가는 전력비, 하수슬러지 처리비 등 운영비 인상으로 매년 상승되는데 반해 2012년 1월 하수도사용료 인상(30%)으로 결함(결손)액의 규모는 다소 축소되었으나, 여전히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투자재원 확충과 재정건전화 등을 위하여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공공요금의 인상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, 사용료 33.18% 인상 시 재정효과와 향후 재정 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,
- 현행 인천시 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누진체계는 부과대상 업종 중 가정용의 부과 비중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사용료는 가장 낮아 가정용 하수처리 비용이 비가정용으로 전가되는 등 업종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누진단계 및 누진을 격차는 요금불균형을 초래할

수 있어 업종별 사용량 등의 비중을 고려한 누진체계의 점진적 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다만, 누진체계 조정에 따라 가정용 등 하수발생량이 적은 업종에서는 사용료가 인상될 수 있고, 다량 발생 업종에서는 사용료 인하 혜택이 발생할 수 있는바, 누진체계 조정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##### 《 조영홍 의원 》

- 하수도 사용료를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30% 인상을 할 경우 시민들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는 건 아닌가?  
⇒ 금년 적자폭이 다소 줄었으나, 2014년부터 지방채상환 예정으로 사용료 미인상시 약 335억 적자발생이 예상됨.(환경녹지국장)
- 하수도사용료 미인상 시 발생하는 문제는?  
⇒ 당장 내년이 문제임. 하수처리장 운영비도 9개월분 밖에 세우지 못했음.(환경녹지국장)

##### 《 이한구 의원 》

- 서울시는 인천시보다 하수도요금에 낮는데 갑자기 33%를 인상하는 이유는?  
⇒ 서울시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 탄력 운영이 가능하나 인천시는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지원이 어려우며,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문제가 심각하여 부득이하게 인상안을 제출하게 됨.(환경녹지국장)

##### 《 안병배 의원 》

- 신도시가 생기면 하수도 사용료로 하수처리장, 하수관거를 설치하나?  
⇒ 하수도법에 따라 개발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 개발로 인해 새로이 발생하는 하수에 대하여 원인이자가 부담토록 함.(환경녹지국장)
- 금년 하수도 특별회계 적자 폭은?  
⇒ 금년에는 25억이며, 내년에는 지방채 상환시기 도래로 약 335억

정도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.(환경녹지국장)

## 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“없음”

나. 반 대 : 허인환 · 이한구 · 윤재상 · 김영분 · 김정현 · 안병배 · 조영홍 의원

## 6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(재석위원 7명 찬성 : 7명)

## 7. 소수의견 요지

○ “해당없음”

## 8. 기타특이사항

○ “해당없음”

- 붙임 1.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  
2.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.  
3.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조례안 별표 1 제1호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사용요율 중

- 가정용  $\text{m}^3$ 당 단가(원)에서
  - 250을 240으로, 400을 380으로,  
440을 420으로, 590을 560으로,  
680을 640으로, 1,160을 1,090으로 각각 수정하고,
- 업무용  $\text{m}^3$ 당 단가(원)에서
  - 360을 340으로, 730을 690으로 각각 수정하며,
- 영업용  $\text{m}^3$ 당 단가(원)에서
  - 830을 790으로, 1,660을 1,570으로 각각 수정하고,
- 옥탕용  $\text{m}^3$ 당 단가(원)에서
  - 360을 340으로, 730을 690으로,  
1,090을 1,030으로 각각 수정하며,
- 산업용  $\text{m}^3$ 당 단가(원)에서 630을 590으로 수정함.

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개 정 안	수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[별표 1]</b>  <b>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</b>                      (제12조제2항)</p> <p>1.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 업종</th> <th colspan="2">사 용 요 율</th> </tr> <tr> <th>사용구분 (m<sup>3</sup>/월)</th> <th>m<sup>3</sup>당 단가 (원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6">가 정 용</td> <td>1~10</td> <td>190</td> </tr> <tr> <td>11~20</td> <td>300</td> </tr> <tr> <td>21~30</td> <td>330</td> </tr> <tr> <td>31~40</td> <td>440</td> </tr> <tr> <td>41~50</td> <td>510</td> </tr> <tr> <td>51이상</td> <td>87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업 무 용</td> <td>1~20</td> <td>250</td> </tr> <tr> <td>21~50</td> <td>310</td> </tr> <tr> <td>51~100</td> <td>530</td> </tr> <tr> <td>101~300</td> <td>56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영 업 용</td> <td>1~30</td> <td>530</td> </tr> <tr> <td>31~50</td> <td>610</td> </tr> <tr> <td>51~100</td> <td>860</td> </tr> <tr> <td>101~500</td> <td>1,24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육 탕 용</td> <td>1~500</td> <td>210</td> </tr> <tr> <td>501~1000</td> <td>420</td> </tr> <tr> <td>1001~3000</td> <td>530</td> </tr> <tr> <td>3001 이상</td> <td>680</td> </tr> <tr> <td>산 업 용</td> <td>1m<sup>3</sup>당</td> <td>47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비교: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,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 요율을 적용함.</p>	구분 업종	사 용 요 율		사용구분 (m <sup>3</sup> /월)	m <sup>3</sup> 당 단가 (원)	가 정 용	1~10	190	11~20	300	21~30	330	31~40	440	41~50	510	51이상	870	업 무 용	1~20	250	21~50	310	51~100	530	101~300	560	영 업 용	1~30	530	31~50	610	51~100	860	101~500	1,240	육 탕 용	1~500	210	501~1000	420	1001~3000	530	3001 이상	680	산 업 용	1m <sup>3</sup> 당	470	<p><b>[별표 1]</b>  <b>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</b>                      (제12조제2항)</p> <p>1.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 업종</th> <th colspan="2">사 용 요 율</th> </tr> <tr> <th>사용구분 (m<sup>3</sup>/월)</th> <th>m<sup>3</sup>당 단가 (원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6">가 정 용</td> <td>1~10</td> <td><b>250</b></td> </tr> <tr> <td>11~20</td> <td><b>400</b></td> </tr> <tr> <td>21~30</td> <td><b>440</b></td> </tr> <tr> <td>31~40</td> <td><b>590</b></td> </tr> <tr> <td>41~50</td> <td><b>680</b></td> </tr> <tr> <td>51이상</td> <td><b>1,160</b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업 무 용</td> <td>1~100</td> <td><b>360</b></td> </tr> <tr> <td>101이상</td> <td><b>730</b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영 업 용</td> <td>1~100</td> <td><b>830</b></td> </tr> <tr> <td>101이상</td> <td><b>1,660</b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육 탕 용</td> <td>1~1,000</td> <td><b>360</b></td> </tr> <tr> <td>1,001~3,000</td> <td><b>730</b></td> </tr> <tr> <td>3,001 이상</td> <td><b>1,090</b></td> </tr> <tr> <td>산 업 용</td> <td>1m<sup>3</sup>당</td> <td><b>630</b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비교: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,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 요율을 적용함.</p>	구분 업종	사 용 요 율		사용구분 (m <sup>3</sup> /월)	m <sup>3</sup> 당 단가 (원)	가 정 용	1~10	<b>250</b>	11~20	<b>400</b>	21~30	<b>440</b>	31~40	<b>590</b>	41~50	<b>680</b>	51이상	<b>1,160</b>	업 무 용	1~100	<b>360</b>	101이상	<b>730</b>	영 업 용	1~100	<b>830</b>	101이상	<b>1,660</b>	육 탕 용	1~1,000	<b>360</b>	1,001~3,000	<b>730</b>	3,001 이상	<b>1,090</b>	산 업 용	1m <sup>3</sup> 당	<b>630</b>	<p><b>[별표 1]</b>  <b>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</b>                      (제12조제2항)</p> <p>1.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 업종</th> <th colspan="2">사 용 요 율</th> </tr> <tr> <th>사용구분 (m<sup>3</sup>/월)</th> <th>m<sup>3</sup>당 단가 (원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6">가 정 용</td> <td>1~10</td> <td><b>240</b></td> </tr> <tr> <td>11~20</td> <td><b>380</b></td> </tr> <tr> <td>21~30</td> <td><b>420</b></td> </tr> <tr> <td>31~40</td> <td><b>560</b></td> </tr> <tr> <td>41~50</td> <td><b>640</b></td> </tr> <tr> <td>51이상</td> <td><b>1,090</b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업 무 용</td> <td>1~100</td> <td><b>340</b></td> </tr> <tr> <td>101이상</td> <td><b>690</b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영 업 용</td> <td>1~100</td> <td><b>790</b></td> </tr> <tr> <td>101이상</td> <td><b>1,570</b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육 탕 용</td> <td>1~1,000</td> <td><b>340</b></td> </tr> <tr> <td>1,001~3,000</td> <td><b>690</b></td> </tr> <tr> <td>3,001 이상</td> <td><b>1,030</b></td> </tr> <tr> <td>산 업 용</td> <td>1m<sup>3</sup>당</td> <td><b>590</b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비교: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,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 요율을 적용함.</p>	구분 업종	사 용 요 율		사용구분 (m <sup>3</sup> /월)	m <sup>3</sup> 당 단가 (원)	가 정 용	1~10	<b>240</b>	11~20	<b>380</b>	21~30	<b>420</b>	31~40	<b>560</b>	41~50	<b>640</b>	51이상	<b>1,090</b>	업 무 용	1~100	<b>340</b>	101이상	<b>690</b>	영 업 용	1~100	<b>790</b>	101이상	<b>1,570</b>	육 탕 용	1~1,000	<b>340</b>	1,001~3,000	<b>690</b>	3,001 이상	<b>1,030</b>	산 업 용	1m <sup>3</sup> 당	<b>590</b>
구분 업종		사 용 요 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사용구분 (m <sup>3</sup> /월)	m <sup>3</sup> 당 단가 (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 정 용	1~10	19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1~20	3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1~30	33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1~40	44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41~50	5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1이상	87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업 무 용	1~20	2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1~50	3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1~100	53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01~300	56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영 업 용	1~30	53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1~50	6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1~100	86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01~500	1,24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육 탕 용	1~500	2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01~1000	42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001~3000	53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001 이상	68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산 업 용	1m <sup>3</sup> 당	47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 업종	사 용 요 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사용구분 (m <sup>3</sup> /월)	m <sup>3</sup> 당 단가 (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 정 용	1~10	<b>25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1~20	<b>40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1~30	<b>44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1~40	<b>59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41~50	<b>68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1이상	<b>1,16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업 무 용	1~100	<b>36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01이상	<b>73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영 업 용	1~100	<b>83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01이상	<b>1,66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육 탕 용	1~1,000	<b>36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,001~3,000	<b>73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,001 이상	<b>1,09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산 업 용	1m <sup>3</sup> 당	<b>63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 업종	사 용 요 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사용구분 (m <sup>3</sup> /월)	m <sup>3</sup> 당 단가 (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 정 용	1~10	<b>24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1~20	<b>38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1~30	<b>42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1~40	<b>56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41~50	<b>64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1이상	<b>1,09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업 무 용	1~100	<b>34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01이상	<b>69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영 업 용	1~100	<b>79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01이상	<b>1,57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육 탕 용	1~1,000	<b>34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,001~3,000	<b>69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,001 이상	<b>1,03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산 업 용	1m <sup>3</sup> 당	<b>59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 1.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

구분 업종	사용요율	
	사용구분 (m <sup>3</sup> /월)	m <sup>3</sup> 당 단가 (원)
가 정 용	1~10	240
	11~20	380
	21~30	420
	31~40	560
	41~50	640
	51이상	1,090
업 무 용	1~100	340
	101이상	690
영 업 용	1~100	790
	101이상	1,570
욕 탕 용	1~1,000	340
	1,001~3,000	690
	3,001이상	1,030
산 업 용	1m <sup>3</sup> 당	590

※ 비고: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,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하수도 사용료의 적용례)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다음 달 검  
침분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수시 수납분에 대하여는 시행일부터 적용한다.